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상공인단체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허용〉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321호)

2025.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소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소상공인단체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허용	2
※ 참고자료	7
1.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개요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송재봉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08. 22.
3. 회부연월일 : 2025. 08.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대기업등의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단체가 새로운 업종·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려면 해당 업종·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되어 그 합의 기간 만료가 도래하거나 합의 도출이 신청된 업종·품목으로서 시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함. 따라서 신규 업종·품목의 지정이 어렵고 기민한 대응이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되거나 합의 도출이 신청된 업종·품목이 아니더라도 소상공인단체가 직접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1호 등).

Ⅲ. 검토의견

1. 소상공인단체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허용(안 제7조 제1항제1호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① 소상공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제2항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① ----- ----- ----- ----- -----.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된 업종·품목 중 1년 6개월 이내에 그 합의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품목	1.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보호·육성할 필요가 있는 업종·품목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신청된 업종·품목 중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현저하게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업종·품목	<삭 제>

현행	개정안
3.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때 동반성장위원회는 해당 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반성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천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u>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품목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른 적합업종 합의 도출이 진행된 경우 그 경과</u> ③ ~ ⑦ (생략) 제8조의2(지정 신청에 따른 참여제한 권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대기업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정·고시를 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u>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존의 합의 기간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기존의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u>에는 권고할 수 없다. ② ~ ⑤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해당 업종·품목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적합업종 합의 도출이 신청되었거나 합의가 도출된 업종·품목인 경우 그 경과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지정 신청에 따른 참여제한 권고 등) ① ----- ----- ----- -----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른 기존의 합의 기간-----제7조제1항제3호에----- -----. ② ~ ⑤ (현행과 같음)

현행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은 소상공인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업종·품목을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된 업종·품목 중 1년 6개월 이내에 합의기간이 만료되는 업종·품목, ②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 이후 합의 도출이 신청된 업종·품목 중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소상공인이 현저하게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업종·품목, ③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이 1년 6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업종·품목으로 제한하고 있음.

개정안은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요건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보호·육성할 필요가 있는 업종·품목’에 대하여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이는 현행법상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려면 해당 업종·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되어 그 합의기간의 만료가 도래하거나, 합의 기간 중 대기업의 사업 개시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현저한 피해발생 가능성 등 요건이 요구됨에 따라 신규 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기 어렵고 상황 변화에 기

민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단체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절차와 관계없이 직접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신속한 소상공인 업종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한국경제인협회 ·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무분별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이 나타날 가능성을 들어 반대하는 입장임.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신청이 용이해짐에 따라 대기업 · 중견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있고, 생계형 적합업종이 확대되는 경우 경쟁이 저하되어 국내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고려한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거치지 않고 소상공인단체가 직접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무분별한 신청으로 인한 기업의 시장진입 제한 등을 우려하고 있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업종의 범위 및 기간, 주기적 재평가 절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단체의 직접 신청 허용 여부에 대한 결

정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장기간 보호 문제(5년 이상) 등과 함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이후 연구용역을 통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문 의 처
02) 6788-5463

【참고자료】

1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개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 **(제도개요)** 중기부장관이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중견기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
 - * 위반 대·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벌칙,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
- ☐ **(근거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18.6.12제정, '18.12.13시행)
- ☐ **(신청대상)** ①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기간 만료 1년 6개월 이내, ②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만료 1년 6개월 이내, ③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신청된 업종·품목 중 대기업등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으로 소상공인의 현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 ☐ **(규제대상)** 대기업등(중견기업 포함)
- ☐ **(지정기간)** 5년
- ☐ **(처리절차)** 소상공인단체 신청 → 실태조사·의견수렴 / 동반성장위원회 추천 → 심의족 심의·의결(중기부 內) → 중기부 지정·고시 → 위반 시 벌칙 부과
 - * **(심의위원회)** 소상공인·중소·중견·대기업계와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위원(각 2명)과, 공익위원 5명의 민간위원(총 15명)으로 구성
- ☐ **(심의기준)** 업종내 소상공인 비율 및 영세성 및 취약성, 소비자 후생 및 산업경쟁력 영향 등 종합 고려
- ☐ **(대기업등 진출제한)** 생계형 적합업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며, 소비자후생·관련산업 영향을 고려해 예외사항 승인·적용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유효 업종·품목(10개) >

연번	업종 및 품목	지정기간	연번	업종 및 품목	지정기간
1	서점업	'19.10.18. ~ '24.10.17. '24.10.18. ~ '29.10.17.	6	간장 제조업	'20.01.01.~'24.12.31. '25.02.01.~'30.01.31.
2	LPG연료 소매업	'19.11.20. ~ '24.11.19. '24.11.20. ~ '29.11.19.	7	된장 제조업	
3	국수 제조업	'21.01.01. ~ '25.12.31.	8	고추장 제조업	
4	냉면 제조업	'21.01.01. ~ '25.12.31.	9	청국장 제조업	
5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21.09.16. ~ '26.09.15.	10	두부 제조업	'20.01.01.~'24.12.31. '25.03.01.~'30.02.28.